

DECENT LEGAL UPDATE | INTERNATIONAL BUSINESS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 구조 및 국내 법인 설립 검토

전자금융업, 외국인투자·외국환,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주요 검토사항

2026. 09. 02. | DECENT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센터

01 KEY ISSUE

핵심 결론: 법인 형태보다 서비스 구조가 먼저입니다

한국 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제·송금·선불결제·전자지급결제대행 등 금융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라면, 국내법인·지점·연락사무소 중 무엇을 선택할지보다 고객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고 각 사업자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의 대표적인 한국 진출 방식

구분	국내법인	외국법인 국내 지점	연락사무소
법적 성격	본사와 구분되는 국내법인	외국 본사의 일부	외국 본사의 일부
영업·수익	허용 범위 내 영업 가능	본사 업무 범위에서 영업 가능	영업·수익창출 불가
외국인직접투자	요건 충족 시 인정	인정되지 않음	인정되지 않음
법적 책임	원칙적으로 현지법인에 귀속	본사까지 확대 가능	본사까지 확대 가능
주된 활용	본격적인 국내 사업	본사 사업의 국내 영업	시장조사·연락·연구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와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 활동에 한정됩니다.

지점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금융업 인허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고객과 계약하고 매출을 발생시킨다면 법인·지점 구조와 세무·인허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KEY ISSUE

결제·송금 서비스라면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가 자국에서 핀테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한국에서 동일한 업무를 바로 제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규제 적용은 서비스 명칭이 아니라 실제 거래구조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비스 요소	우선 확인할 사실	주요 규제 검토
고객 간 송금	이체 지시·승인·정산에 직접 관여하는지	전자자금이체업무 등
선불 잔액·포인트	금전적 가치를 발행하고 상환 책임을 지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온라인 결제	결제정보만 전달하는지, 실제 결제를 중개하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
국경 간 정산	국내·해외 가맹점과 수취·송금·환전에 관여하는지	전자금융·외국환 규제
고객 자금 보관	누가 자금을 수취·보관하고 반환 의무를 지는지	인가·등록 및 이용자 자금 보호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허가 체계

전자화폐 발행·관리업무는 금융위원회 허가 대상이며,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등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에 해당하면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과 재무 건전성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검토 순서



03 KEY ISSUE

국내법인과 지점의 선택은 투자·책임·운영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국내법인은 본사와 구분된 법인격을 가지지만, 지점은 외국 본사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단순히 설립절차의 편의만 비교하기보다 한국 사업의 규모와 기간, 인허가, 고용, 자금조달, 본사 책임 범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검토 기준	국내법인이 상대적으로 적합한 경우	지점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사업 단계	장기·본격적인 국내 사업	본사 사업 범위의 제한적 국내 영업
법적 책임	본사와 책임을 원칙적으로 분리할 필요	본사가 직접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
투자·지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국내 투자유치·지분거래 계획	별도 국내 지분구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운영	국내 인력·계약·파트너십이 확대될 예정	본사 통제 아래 비교적 단순한 운영
인허가	규제업무상 국내법인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가 지점 구조를 허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와 외국환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인정 기준과 법인설립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의 투자로도 국내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 신고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송금 전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외국환 신고 경로를 확정합니다.

본사와 국내 거점 간 대여금·용역대금·라이선스료 등 자금거래도 사전에 구조화합니다.

금융업 인허가에서 요구하는 자본 요건과 외국인투자 절차를 별도로 보지 않도록 일정을 통합합니다.

04 KEY ISSUE

해외 서버와 본사 접근이 있다면 개인정보 국외이전도 설계해야 합니다

해외 핀테크 기업은 본사의 서버나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를 한국 서비스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서버 위치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저장·처리되거나 해외 본사에서 조회되는 구조인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외에서 조회되는 경우, 해외 처리위탁 및 해외 보관도 국외이전에 포함합니다. 이전 근거, 이전 항목·국가·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목적과 보유기간, 보호조치 등을 실제 데이터 흐름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진출을 위한 6단계 체크

01	서비스 확정	결제·송금·PG·SaaS·가상자산 등 실제 기능과 자금 흐름 정리
02	금융규제 검토	전자금융업 등 허가·등록 대상 여부와 등록요건 확인
03	진출 형태 결정	국내법인·지점·연락사무소 중 사업모델에 맞는 구조 선택
04	투자·외국환 설계	투자금 송금, FDI·증권취득 신고, 본사와 국내 거점 간 거래 검토
05	데이터 구조 확인	해외 서버·본사 조회·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근거 및 고지 점검
06	계약·운영 정비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파트너·본사 간 계약 정비

CHECK POINT

한국 진출 방식은 이 검토과정에서 결정되는 결과입니다. 국내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모델이나 인허가 요건에 맞지 않아 구조를 바꾸는 상황을 피하려면, 서비스·자금·데이터 흐름을 먼저 도식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KEY ISSUE

DECENT의 대응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은 법인설립 절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비스 구조에 따라 금융규제, 외국인투자·외국환, 개인정보, 계약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DECENT는 실제 사업모델과 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필요한 규제와 실행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01	한국 사업모델 및 적용 법령 검토
02	국내법인·지점 등 진출 구조 설계
03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 신고 검토
04	전자금융업 등 인허가·등록 대상 여부 검토
05	본사와 국내 거점 간 계약 및 자금거래 구조 검토
06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데이터 처리구조 검토
07	국내 이용약관·사업계약·규제기관 대응

실무 제안

한국 법인을 먼저 설립하기보다 서비스·인허가·투자·데이터 구조를 먼저 검토한 뒤 적합한 진출방식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검토 단계에서는 서비스 설명서, 예상 자금 흐름, 계약 당사자, 데이터 처리 위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요 참고자료

1. KOTRA Invest KOREA,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2. KOTRA Invest KOREA, 「기업설립 절차」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본 자료는 2026년 9월 2일 현재 공개된 법령과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진출 또는 인허가 진행 시 최신 법령과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